

자본제공제조합 회사소개서



Machinery Financial Cooperative

MAFC



Contents

조합소개 및 이용대상	2
보증사업 안내	3
보증이용 절차	5
공제사업 안내(PL 및 재산종합공제)	7
공제사업 안내(재사용전지공제)	9

자본재란?

자본재(Capital Goods)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소비재(Consumption Goods)와 달리, 다른 재화의 생산이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생산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자본재로는 기계, 조선, 항공, 플랜트/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및 사회기반시설(SOC) 등이 있으며, 이는 핵심 제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각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산업입니다.



※ 국내 유일의 자본재 전문 보증기관

자본재공제조합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자본재산업발전을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 보증기관입니다.

조합은 창립 이래 40여년 동안 건설한 재무구조와 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자본재산업 전반의 신뢰성 제고 및 수요 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약 40년 업력의 높은 신뢰도

1986년 설립 이래로 대기업을 포함한 우량기업들이 가입하여 이용 중입니다.



안정적 재무구조

한국신용평가
법인신용등급
AA유지



체계적 리스크관리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자산을 보호합니다.

※ 이용대상

최종 소비자 이외의 모든 자본재산업 영위업체(제조업, 유통, 서비스 포함)들은 자본재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다양한 보증/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부리기업 및 각종 정부인증제품(NEP/NET/GR) 관련 기업 모두 조합원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연혁

2023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손해배상책임공제’ 시행
2016	‘기계가치·성능 보장사업’ 시행
2015	‘공사이행보증’ 시행
2012	중부지사 개설
2007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명칭변경
2004	‘인터넷전자보증서비스’ 개시
1998	경인지사 개설
1988	영남지사 개설
1987	보증업무 개시
1986	산업자원부장관 설립허가(기계공제조합)
1986	기계공제조합 창립총회

※ 조합원 사업주기별 보증지원

입찰보증

조합원이 입찰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에 대한 보증

계약보증

조합원이 납품 또는 용역제공 시 계약 당사자에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에 대한 보증

지급보증

조합원이 계약이행 중 선금, 중도금, 자재 등 각종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

하자보증

조합원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검수 또는 준공검사 후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하자의 보수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

※ 정책보증

품질인증보증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인증(NEP) 등, 우수품질인증제품이 포함된 관련 설비를 제조, 유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계약, 지급, 하자보증 등의 정책보증

뿌리산업보증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뿌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입찰, 계약, 지급, 하자보증 등의 정책보증

※ 기타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업체에서 수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보증금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자재구입보증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경우 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채무를 보증

※ 조합원 지원서비스

정보 지원

- 각종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한국기계산업진흥회(KOAMI)와 연계한 각종 정책지원 정보 제공
- 월별 산업동향 제공(KOAMI Insight) 등

마케팅 지원

-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 혁신업체 산업시찰
- 멤버십 워크숍 및 세미나
- 경영자 및 실무 담당자 간담회 등

※ 보증이용절차

보증대상

- 조합원이 제조한 기계류 · 부품 · 소재 및 각종 산업설비의 판매 또는 설치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이행보증
- 조합원의 제품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용역, 유지관리용역계약에 대한 이행보증
- 조합원의 수출 또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각종 이행보증

보증이용절차



가입신청

인터넷 영업점을 통해 가입신청서에 직접 기입 및 파일첨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

가입심사

- 신규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여 신용등급 부여, 그 결과에 따라 조합과의 업무거래조건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조합의 안정성 증대
- 신용평가 등급 : 정상기업을 AAA~C-등급까지 10단계 등급으로 구분

출자

- 조합원이 되려면 가입승인 후 소정의 출자 필요(최소 출자금 100만원)
- 일반보증 최소납입 구좌 : 5구좌 이상(1구좌 : 20만원)
* 공제상품(PL, 재산공제 등)은 출자없이 이용가능

약정체결

- 조합원이 조합과 보증거래를 위하여 조합 소정서식에 의하여 당사자간 권리 및 의무를 약속하는 계약

보증수수료

- 신용할인 및 고액할인을 적용하여 업계 최저 수준의 보증료율 제공



신용할인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보증료 할인



고액할인

일정액 이상의 고액보증에 따라 최대 80%까지 보증료 추가할인

※ 생산물배상책임(PL)공제

생산물의 '결함'에서 기인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 보상하는 손해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손해

👤 지원대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표시판매업자(제품상 제조/수입업자로 표시한 자)

📄 저렴한 공제료

단체계약을 통해 직접가입 대비 공제료 20~30% 절감

📄 최상의 클레임처리

국내·외 수많은 사고에 대한 보상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클레임 서비스 제공



- 공제계약 : 가입업체와 공제조합간 계약체결
- 보상처리 : 공제조합과 업무협약된 보험사가 보상처리

※ 재산종합공제

기업의 재물(건물, 기계, 동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

🔍 보상하는 손해

재물손해 보장

화재, 낙뢰, 폭발, 지진, 폭풍우, 우박, 붕괴, 항공기 또는 차량에 의한 손해 등 구내에서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물손해를 보상

기계위험 보장

재질, 설계, 조립상의 결함, 진동, 종업원의 부주의, 과전압, 부전압, 방전 등 기계적 사고로 인한 물적손해를 보상

기업휴지 보장

재물손해, 기계위험으로 인해 조업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경우 이에 기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

배상책임 보장

제3자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기인한 손해를 보상



※ 재사용전지공제

자본재공제조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반영된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배상책임을 담당하는 대표기관

⑧ 가입대상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 적정설비 및 인력, 체계를 갖춘 안전성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법령 제34조의 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 보장내용

피공제자가 안전성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재사용전지 관련 제도 |

✍️ 안전성검사의무

재사용전지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자체 안전성검사 또는 제3자 안전성검사를 거친 제품만 판매 가능

자체 안전성검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재사용전지 사업자 스스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제3자 안전성검사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 손해배상책임 의무화

안전성검사기관의 부실 안전성검사로 인한 제3자 대인·대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화

-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공제가입 사실 증명자료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함

| 재사용전지 가입 절차 |





본사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여의도동) 기계회관 본관 8층

T. 02-369-8500

F. 02-369-8520~21

경인지사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1층

T. 032-434-4206

F. 032-434-4208

중부지사

35209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405호

T. 042-489-6468

F. 042-489-6469

영남지사

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0층 1003호

T. 055-212-6824

F. 055-212-6820